

의안번호	2203361
의 회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4. 9. 19.
추계번호	24C3321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3(협동돌봄센터)	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종사자는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조의3(협동돌봄센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협동돌봄센터 설치·운영(안 제44조의3)

-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,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

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참고로 현행법 제44조의2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²⁾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1,119개소로, 이와 관련한 2024년 예산은 총 577억원임

[표 1]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

센터수	이용아동		종사자 수
	정원	현원	
1,119개소	26,631명	25,637명	3,476명*

* 국비지원 종사자 2,667명, 지자체 추가인력 809명
자료: 보건복지부

- 다만, 개정안에서는 협동돌봄센터 설치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, 현시점에서 협동돌봄센터 설치·운영 현황 등이 정확히 파악된 자료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- 1)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 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-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2) 돌봄이 필요한 6~12세 아동(초등학생) 대상 방과 후 돌봄, 문화·예술·체육 및 지방탐방 프로그램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